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25 발의연월일: 2025. 6. 11.

발 의 자: 엄태영·정동만·김정재

권영진 • 박충권 • 이만희

박덕흠 • 서천호 • 김소희

이종배 의원 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2 제72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72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 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72.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